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개선

공동 건의집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한국중견기업연합회
Federation of Middle Market Enterprises of Korea



한국상장회사협의회
KOREA LISTED COMPANIES ASSOCIATION



코스닥협회

발간사

지난 60년,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질적·양적 성장을 일구어낸 나라의 대명사가 되어왔습니다. G7으로의 진입이 논의되는가 하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역시 유력하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어느덧, 우리 사회는 고도로 발전된 경제적·사회적 시스템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나라로 우뚝 섰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주요국들의 선진 제도 및 체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글로벌 스탠더드」를 주요 키워드로 사용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예전보다 자주 눈에 띄는 이유가 이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스탠더드」의 추구가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때도 있지만,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추종은 우리 사회를 우리만의 문화적·역사적 현실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 가능성 또한 충분합니다.

이에 우리 경제단체들은, 특히 「글로벌 스탠더드」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많은 주제, ‘기업지배구조’, ‘공정거래’, ‘기업세제’를 중심으로 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를 지난 9월 20일, 공동 세미나를 통해 일부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 공동 건의집은 진정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정부와 국회의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자 상세한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발간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우리 경제가 친기업 또는 반기업 정서에서 벗어나 오롯이 ‘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되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2023년 11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개선 공동 건의집

I.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분야	1
I-1. 다중대표소송 제소 요건 강화	3
I-2. 집중투표제도 합리화	6
I-3. 신주인수선택권제도 도입	9
II. 독점 및 공정거래 제도 분야	13
II-1. 지주회사 사전규제 유연화	15
II-2. 대규모기업집단법제 전면 재검토	22
II-3. 배임죄 적용 완화	26
II-4.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31
III. 기업세제 국제비교 및 시사점	35
III-1. 법인세제 개편	37
III-2. 상속세 부담 완화 및 자본이득과세 제도 전환 검토	41
III-3. 과감한 투자지원 세제 마련 필요	46

I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분야

- I-1. 다중대표소송 제소 요건 강화
- I-2. 집중투표제도 합리화
- I-3. 신주인수선택권제도 도입

I-1	다중대표소송 제도 요건 강화																											
소관부처	법무부																											
관련법령	상법 제406조의2																											
■ 요약 ■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대표소송 제도는 조사대상 주요국 7개 중 4개의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 허용 여부에 한해 글로벌 스탠더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에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고 있는 5개 국가의 제도를 추가로 비교 분석 ● 5개 주요국은 다중대표소송과 관련하여 원고적격에 있어서는 대부분 단독주주권을 채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소수주주권과 단순 비교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과 같이 소 제기를 위해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거나, 일본의 단원주 제도 등과 결합으로 인해 사실상 소수주주권에 해당 ● 다중대표소송을 채택한 국가들의 글로벌 스탠더드는 모자회사 관계에서 자회사의 독립된 법인격 인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 해 예외적으로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과 영국은 자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판례를 통해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고, 일본도 100% 완전 모자회사 관계만 인정 <p style="text-align: center;"><다중대표소송제도 관련 G7 국가의 입법례 비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d9ead3;"> <th>구분</th> <th>한국</th> <th>미국</th> <th>일본</th> <th>영국</th> <th>캐나다</th> <th>프랑스</th> <th>독일</th> <th>이탈리아</th> </tr> </thead> <tbody> <tr> <td>도입 여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X</td> <td>X</td> <td>X</td> </tr> <tr> <td>자회사 요건</td> <td>50% 초과</td> <td>100%</td> <td>100%</td> <td>100%</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도입 여부	○	○	○	○	○	X	X	X	자회사 요건	50% 초과	100%	100%	100%	-	-	-	-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도입 여부	○	○	○	○	○	X	X	X																				
자회사 요건	50% 초과	100%	100%	100%	-	-	-	-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완전 모자회사 관계에 한하여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는 상법 개정안 적극 재검토 필요(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36) ⇒ (개정) 상법 제 406조의2 제①항, 제③항 																											

1 현황 및 문제점

□ (G7 중 4개국만 도입) 다중대표소송은 독일·이탈리아·프랑스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어 주요 국가의 도입 비율은 비등

□ (엄격한 적용범위) 국가에 따라 요건을 강화한 제도를 적용하여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

○ 일본의 경우 완전 모회사 관계에 한 해 허용하는 등 매우 엄격한 소 제기 요건* 규정

* ①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할 것, ② 모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이 모회사 자산액의 20%를 초과할 것, ③ 외국자회사는 소 제기 대상에서 제외(회사법 제847조의3)

○ 미국과 영국은 판례로 다중대표소송 인정, 그러나 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일한 실체로 볼 수 있는 경우*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모·자회사 법인격이 형해화되는 경우, 또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경영진이 동일하게 구성되거나, 자회사가 모회사의 대리인으로 행위한 경우 등 요건을 엄격하게 운용

- 영국은 2013년 100% 자회사에 대한 이중대표소송 제기 건에 대한 인용 결정 사례

○ 캐나다 회사법은 종속회사를 위한 다중대표소송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다중대표소송을 포함한 모든 주주의 대표소송은 사전에 법원의 소송허가를 받도록 규정

□ (남용방지장치) 우리나라 포함 독일과 이탈리아 또한 대표소송 제기를 위한 지분요건으로 소수주주권을 채택하고 있으며, 단독주주권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라 하더라도 남용되지 않도록 법체계를 구성

○ 미국의 경우 원고적격 지분비율을 단독주주권으로 낮추는 대신, 제소적격 제한을 위한 3원칙 적용으로 경영을 방해하는 등의 부적절한 목적의 소 제기 방지

〈미국의 대표소송 관련 3원칙〉

제소적격 제한 원칙	내용
① 주식동시보유 원칙	이사의 부정행위 당시 주식을 보유한 자 또는 그러한 자로부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양수한 자
② 적절대표의 원칙	회사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자
③ 주식계속소유의 원칙	소제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식을 소유 - 주주가 아니거나 적절 대표성 상실 시 소각하 명시

- **일본은 단독주주권이라 하더라도 실제 정관으로 단원주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회사가 절대 다수임에 따라 **사실상 소수주주권**

(참고) 일본 단원주 제도

- ✓ 회사는 정관으로 일정한 수의 주식을 '1단원'으로 하여 1개의 의결권 부여 가능(회사법 제308조 제1항 단서)
- ✓ 단원 미만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 및 대표소송 제소권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회사법 제189조 제1항, 제2항, 제847조 제1항)
- ✓ 전국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하는 경우 거래 단위로 100주 단위로 통일 (도쿄증권거래소 유가증권상장규정 제205조 등)
 - ('07) 1주~2,000주까지 8종류의 단원주 허용 → ('14) 100주, 1,000주 2종류로 통합 → ('18) 100주로 일원화

- 미국을 포함한 영국, 캐나다 등 **영연방 국가들의 경우 법원의 권한을 확대하여 남용방지 제도를 구축하는 경향**
 - (美) 회사의 소각하 신청을 받아 법원이 대표소송 각하 가능
 - (英) 법원의 소송 허가 여부 심리·판단 후 제소 가능
 - (加) 법원의 소송계속에 대한 허가, 적절성 여부 선별

2 개선방안

- **현행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해야하는 제소요건을 강화하여 100% 완전 모자회사 관계에 한하여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도록 개정(상법 제406조의2)**

1-2	집중투표제도 합리화																																				
소관부처	법무부																																				
관련법령	상법 제542조의7																																				
■ 요약 ■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투표제도의 의무화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G7 국가의 집중투표제도 채택여부 등을 비교·검토한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개국 중 4개국은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고 나머지 4개국은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집중투표제 의무화 주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또한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4개 국가 모두 이를 강행법규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Opt-out이나 Opt-in 방식으로 회사에 선택권 부여 ● 집중투표제 채택 국가의 행사요건 등과 비교하여 우리 상법은 Opt-out방식에 더하여 상대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적용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배제를 위한 정관변경 결의 시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 ●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집중투표제도 채택을 현행과 같이 회사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주주의 의결권 제한은 지나친 역차별적 규제 폐지 바람직 <p style="text-align: center;">〈집중투표제도 관련 주요국 입법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d9ead3;"> <th>구분</th> <th>한국</th> <th>미국</th> <th>일본</th> <th>캐나다</th> <th>영국</th> <th>프랑스</th> <th>독일</th> <th>이탈리아</th> </tr> </thead> <tbody> <tr> <td>도입 여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채택 방식</td> <td>opt-out</td> <td>opt-in</td> <td>opt-out</td> <td>opt-in</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요건 등</td> <td>집중투표 배제 위한 정관변경시 의결권 3% 제한</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도입 여부	○	○	○	○	×	×	×	×	채택 방식	opt-out	opt-in	opt-out	opt-in	-	-	-	-	요건 등	집중투표 배제 위한 정관변경시 의결권 3% 제한	-	-	-	-	-	-	-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도입 여부	○	○	○	○	×	×	×	×																													
채택 방식	opt-out	opt-in	opt-out	opt-in	-	-	-	-																													
요건 등	집중투표 배제 위한 정관변경시 의결권 3% 제한	-	-	-	-	-	-	-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안) 제도 도입을 전제하는 Opt-out 채택방식을 Opt-in 방식으로 변경하여 기업 선택권 제고 ⇒ (개정) 상법 제542조의7 제③항, 제④항 ● (2안) 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3% 초과 의결권 제한 조항 삭제 ⇒ (개정) 상법 제542조의7 제③항 																																				

1 현황 및 문제점

□ (회사 선택권 부여가 글로벌 스탠더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주요국 중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국가는 미국, 일본, 캐나다 3개국인 것으로 조사

○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모든 국가는 이를 **강행법규로 규정하는 국가는 없으며**, Opt-out이나, Opt-in 방식*으로 **회사 선택권 부여**

* (Opt-out) 정관에 배제 규정이 없을 경우 제도 적용, (Opt-in) 정관에 도입 규정이 없을 경우 제도 미적용

(참고) 미국의 집중투표제도 임의규정화 사례

- ✓ 1945년에 이르기까지 22개주가 강행규정으로 집중투표제도를 채택
- ✓ 1950년대 이후 대부분의 주가 집중투표제를 임의규정으로 전환하고, 현재 5개주(애리조나, 네브라스카, 사우스다코다, 웨스트버지니아)만 강행규정 적용 중
- ✓ 전환 이유는 기업경영을 둘러싼 환경의 급변에서 찾을 수 있으며, 각 주의 적대적 인수합병 가능성 축소를 통한 기업 경영환경 개선 노력

○ 캐나다의 경우 ①공개회사가 아닌 회사가 ②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경우에만 등 제도 활용 가능(공개회사는 채택 불가)

○ 유럽의 경우에는 어느 국가도 집중투표제 자체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데, 이사회 제도와 그 운영상 집중투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 기인
 - 예컨대 독일은 감사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집중투표제 자체에 대한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

□ (세부적 제도 보완 검토 필요) 전 세계적으로 집중투표제는 개별 회사가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과거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한 주장은 타당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 다만,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국가들 중 행사요건 등을 비교해 보았을 때 Opt-out 방식을 비롯하여 우리 상법이 가장 엄격한 요건을 채택

○ 반면, 대규모 상장회사의 정관배제 또는 배제정관 변경 시 3% 초과 의결권 제한은 전 세계 유례없는 제도이며 대주주 등에 대한 지나친 역차별적 규제

〈집중투표제도 도입 국가 입법례〉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지분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 대규모 상장회사는 1%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가 실행하는 경우 불필요 • 주주의 청구로 실행되는 경우에는 단독주주권 	단독주주권	단독주주권
회사의 공시	총회의장이 결의 전 집중투표 청구가 있다는 취지 알림	-	-	-
행사 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주총회 7일 전 • (상장) 주총 6주 전 	주주의 통지에 의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48시간 전	주주총회 5일 전	
행사 방법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	회사 및 주주의 통지	주주의 통지	
적용 예외	정관배제(opt-out)	정관규정 없으면 적용 없음(opt-in)	정관배제(opt-ou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규정 없으면 적용 없음(opt-in) • 공개회사는 집중투표 채택 불가
적용 예외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정관배제 또는 배제정관 변경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의결권 제한	-	-	-
별도 상정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집중투표배제에 관한 정관변경 의안은 별도 상정	-	-	-

2

개선방안

- (1안) 제도 도입을 전제하는 Opt-out 채택방식을 Opt-in 방식으로 변경하여 기업 선택권 제고
- (2안) 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3% 초과 의결권 제한 조항 삭제

1-3	신주인수선택권제도 도입
소관부처	법무부
관련법령	상법

■ 요약 ■

<p>현황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신주인수선택권 제도를 도입하여 활용중이며 경영권 방어에 유용한 수단 ○ 미국이나 일본의 회사법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의 활용과 더불어 자본시장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선택권제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 또한 적대적 M&A가 많은 나라가 아님에도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경영권 방어수단 허용 ○ 정부는 2010년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조달수단이면서 경영권방어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신주인수선택권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무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안은 신주인수선택권제도의 남용소지를 선제적으로 방지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진의 자의적 발동 등을 제한, 방어수단에 대한 공시의무 부여, 정당한 경영권방어에 한정된 실제적 규제, 현저하게 불공정한 불이익 발생에 따른 소송근거 등 마련 ○ 적대적 M&A 영역에서 글로벌 스탠더드 대비 한국은 공격은 자유로우나 방어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고 우리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지출과 기밀 유출 우려 불식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의 상호·순환출자를 근거로 경영권 방어수단의 도입이 어려웠으나, 현재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지 못한 그룹사는 극소수 <p style="text-align: center;">〈경영권 방어수단(신주인수선택권제도, 차등의결권) 주요국 입법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한국</th> <th>미국</th> <th>일본</th> <th>영국</th> <th>프랑스</th> <th>이탈리아</th> <th>독일</th> <th>캐나다</th> </tr> </thead> <tbody> <tr> <td>신주인수선택권</td> <td>X</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차등의결권</td> <td>벤처限</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X</td> <td>○</td> </tr> <tr> <td>황금주</td> <td>X</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X</td> </tr> </tbody> </table>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캐나다	신주인수선택권	X	○	○	○	○	○	○	○	차등의결권	벤처限	○	○	○	○	○	X	○	황금주	X	○	○	○	○	○	○	X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캐나다																													
신주인수선택권	X	○	○	○	○	○	○	○																													
차등의결권	벤처限	○	○	○	○	○	X	○																													
황금주	X	○	○	○	○	○	○	X																													
<p>개선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국 대비 M&A법제 관련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 해소 방안으로 신주인수선택권제도 도입 ⇒ (신설) 상법 제360조의27 이하 																																				

1 현황 및 문제점

□ (유일한 제도 미도입 국가) 조사대상인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신주인수선택권 제도*를 도입하여 활용 중

(참고) 신주인수선택권(Poison-Pill) 제도

- ✓ 적대적 M&A 상황에서 공격자를 제외한 주주들에게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 매입 권리를 주어 공격자의 지분율을 낮출 수 있으며 실제 적대적 인수 시도가 발생하지 않는 한 비용 발생이 없으며, 자본구조나 지배권 등의 왜곡도 미발생
- ✓ M&A 시도가 있기 전에 사전적으로 대상회사의 협상력을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 다른 경영권 방어수단에 비해 효율적인 수단

○ 신주인수선택권은 그 내용은 다양하나, 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인 **워런트(warrant)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일반적**

- (美) 모범회사법 및 델라웨어주 회사법에서 워런트 발행 허용(DGCL§157 및 RMBCA §6.24)
- (日) 신주인수선택권제도의 취지를 반영한 신주예약권제도 도입(회사법 제2조 제21호)
- (佛) 미국식 포이즌필을 응용한 프랑스식 워런트 도입(프랑스 상법 233-32 II)

○ 미국은 이사회가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는 형태인 반면, 일본과 프랑스 등 그 외의 국가들의 경우 명문규정 또는 해석상 신주인수선택권이 인정되며 **주주총회 승인을 얻는 형태가 대부분**

(참고) 미국 기업의 포이즌필 도입 사례
- Moran v. Household International Inc. 사건 -

- ✓ Household사는 사외이사가 과반수로 구성된 이사회의 결의로 장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공개매수에 대비하여 사전적 방어수단으로서 Household사의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에 대한 공개매수가 공표되는 경우, 200달러의 보통주를 100달러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모든 보통주주에게 배정함. 또한 Household의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을 단일 기업이나 집단이 매수하는 경우에도 200달러의 보통주를 100달러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사인 Moran이 이러한 권리배정은 이사회의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 주장했던 사건.
- ✓ 델라웨어 주 대법원은 경영권 방어 목적의 신주인수선택권을 발행하는 것은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경영 판단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사회가 결정한 포이즌필의 발행은 회사가 위압적인 공개매수에 취약하다고 믿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한 회사를 지키기 위하여 발행한 포이즌필은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사실상 포이즌필의 적법성이 인정된 첫 사례로 언급되고 있음.

- (방어수단 도입 인식 전환 필요) 우리나라는 대기업 재벌, 상호·순환출자 등을 후진적인 지배구조와 소유구조를 이유로 적대적 M&A 방어 법제 도입에 매우 비판적이며 왜곡된 방식의 기업지배구조 규제 유지

 - 반면,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적대적 M&A가 많지 않은 일본의 경우 자본시장의 구조변화*를 배경으로 방어수단 다양화

* 안정주주의 지분비율 저하, 상호·순환출자 비율의 감소, 기관투자자 지분비율 증가 등
 - 더불어 공정위의 제재로 인해 순환출자를 유지하고 있는 그룹사는 극소수이며 오히려 방어수단의 제한으로 인하여 타 제도들이 도입 목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활용*되는 부작용

* 자기주식처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실권주 배정 등

- (제도 자체의 활용성 및 부작용 최소화 고려) 미국이나 일본의 회사법은 경영권 방어수단으로의 활용과 더불어 자본시장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 선택권제도 마련

 - 신주인수선택권제도 자체는 자본조달의 측면에서 특별히 위법하거나 정당성이 없다고 보긴 어려우나, 경영권 방어라는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적절한 사용 범위에 대한 논쟁 발생
 - 회사의 가치 및 주주 일반의 이익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와 함께 도입하여 부작용 최소화

2

개선방안

- 주요국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는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통해 경영권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의 균형을 갖출 필요

II 독점 및 공정거래 제도 분야

- II-1. 지주회사 사전규제 유연화
- II-2. 대규모기업집단법제 전면 재검토
- II-3. 배임죄 적용 완화
- II-4.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II-1	지주회사 사전규제 유연화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관련법령	<table border="1"> <thead> <tr> <th>법령</th> <th>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사전행위규제 조항</th> </tr> </thead> <tbody> <tr> <td>제18조 제2항 제1호</td> <td>자본총액 2배 이상 부채를 보유할 수 없음</td> </tr> <tr> <td>제18조 제2항 제2호</td> <td>자회사의 주식 50% 이상 보유해야함</td> </tr> <tr> <td>제18조 제2항 제3호</td> <td>계열사 외의 회사 주식 5% 이상 보유 금지,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사 주식 소유 행위 금지</td> </tr> <tr> <td>제18조 제2항 제4호</td> <td>금융지주회사는 금융업 외의 회사 주식 소유 금지</td> </tr> <tr> <td>제18조 제2항 제5호</td> <td>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회사 주식 소유 금지</td> </tr> <tr> <td>제18조 제3항 제1호</td> <td>자회사는 손자회사 주식 50% 이상 보유해야함</td> </tr> <tr> <td>제18조 제3항 제2호</td> <td>자회사는 손자회사 외의 회사 주식 소유 금지</td> </tr> <tr> <td>제18조 제3항 제3호</td> <td>자회사는 금융업 손자회사를 보유할 수 없음</td> </tr> <tr> <td>제18조 제4항 제1호</td> <td>손자회사는 계열사 주식 소유 금지</td> </tr> </tbody> </table>	법령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사전행위규제 조항	제18조 제2항 제1호	자본총액 2배 이상 부채를 보유할 수 없음	제18조 제2항 제2호	자회사의 주식 50% 이상 보유해야함	제18조 제2항 제3호	계열사 외의 회사 주식 5% 이상 보유 금지,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사 주식 소유 행위 금지	제18조 제2항 제4호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업 외의 회사 주식 소유 금지	제18조 제2항 제5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회사 주식 소유 금지	제18조 제3항 제1호	자회사는 손자회사 주식 50% 이상 보유해야함	제18조 제3항 제2호	자회사는 손자회사 외의 회사 주식 소유 금지	제18조 제3항 제3호	자회사는 금융업 손자회사를 보유할 수 없음	제18조 제4항 제1호	손자회사는 계열사 주식 소유 금지
법령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사전행위규제 조항																				
제18조 제2항 제1호	자본총액 2배 이상 부채를 보유할 수 없음																				
제18조 제2항 제2호	자회사의 주식 50% 이상 보유해야함																				
제18조 제2항 제3호	계열사 외의 회사 주식 5% 이상 보유 금지,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사 주식 소유 행위 금지																				
제18조 제2항 제4호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업 외의 회사 주식 소유 금지																				
제18조 제2항 제5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회사 주식 소유 금지																				
제18조 제3항 제1호	자회사는 손자회사 주식 50% 이상 보유해야함																				
제18조 제3항 제2호	자회사는 손자회사 외의 회사 주식 소유 금지																				
제18조 제3항 제3호	자회사는 금융업 손자회사를 보유할 수 없음																				
제18조 제4항 제1호	손자회사는 계열사 주식 소유 금지																				
■ 요약 ■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규제]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규제는 G5 중 오직 한국만 시행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경제력집중 억제 목적으로 각종 사전규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비율 규제, 증손회사 규제, 금사분리, 자회사 지분율 규제 등 • G5 경쟁법들은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회사법을 통해 사후규제만 시행 <p style="text-align: center;">〈주요국 지주회사 사전규제 법제 및 특징〉</p> <table border="1"> <thead> <tr> <th>국가</th> <th>경쟁법상 규제</th> <th>회사법상 규제</th> </tr> </thead> <tbody> <tr> <td>미국</td> <td>서면법 : 카르텔 같은 부당거래행위 금지, 기업집단 독점화 금지 클레이튼법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규제</td> <td>주의·충실의무 :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이익 착취행위 규제 회사기회유용 금지 : 지주회사의 자회사 기회유용 금지</td> </tr> <tr> <td>일본</td> <td>독점금지법 "사업지배력이 과도한" 지주회사 규제(제9조), 금융회사의 타국내 회사 지분보유 금지(공정위 허가시 지분보유 허용)</td> <td>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한 해외 자회사 감시체계 구축 요구 자회사의 일탈행위와 자회사 이익 착취 행위는 선관주의의무로 규제</td> </tr> <tr> <td>영국</td> <td>경쟁법 : 경쟁제한적 지주회사 설립 금지 (제101조), 지주회사의 시장지배지위 남용 금지 (제102조)</td> <td>지주사-자회사 간 관계 규정만 있고 지주회사 사전규제 없음 정관으로 지주사 설립 적법성 인정</td> </tr> <tr> <td>독일</td> <td>경쟁제한방지법 : 경쟁제한 및 경제력 집중 우려 기업에 한해 연방카르텔청이 사전 심사 → 기업결합 승인·무효 결정(제22조)</td> <td>주식법 : 콘체른(기업연합체) 및 지배-종속관계 기업집단 등에 대해 정의(제15~18조)하고 모회사(지주사) 이사회에 주의·감시의무 부과</td> </tr> <tr> <td>프랑스</td> <td>* 별도 경쟁법 없이 상법전 안에 경쟁법이 편입 지분 10% 한도 내 상호출자 지배구조 허용 지주회사는 주주·채권자 보호 위해 계열사 현황 및 연결회계자료 공시</td> <td></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 파급영향] 주요국 기업집단들은 공통적으로 중간지주회사를 운영하여 경영효율성을 도모하나,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3단계까지의 지배관계만 허용하고 있어 다양한 경영전략을 수립하는데 제약 	국가	경쟁법상 규제	회사법상 규제	미국	서면법 : 카르텔 같은 부당거래행위 금지, 기업집단 독점화 금지 클레이튼법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규제	주의·충실의무 :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이익 착취행위 규제 회사기회유용 금지 : 지주회사의 자회사 기회유용 금지	일본	독점금지법 "사업지배력이 과도한" 지주회사 규제(제9조), 금융회사의 타국내 회사 지분보유 금지(공정위 허가시 지분보유 허용)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한 해외 자회사 감시체계 구축 요구 자회사의 일탈행위와 자회사 이익 착취 행위는 선관주의의무로 규제	영국	경쟁법 : 경쟁제한적 지주회사 설립 금지 (제101조), 지주회사의 시장지배지위 남용 금지 (제102조)	지주사-자회사 간 관계 규정만 있고 지주회사 사전규제 없음 정관으로 지주사 설립 적법성 인정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 경쟁제한 및 경제력 집중 우려 기업에 한해 연방카르텔청이 사전 심사 → 기업결합 승인·무효 결정(제22조)	주식법 : 콘체른(기업연합체) 및 지배-종속관계 기업집단 등에 대해 정의(제15~18조)하고 모회사(지주사) 이사회에 주의·감시의무 부과	프랑스	* 별도 경쟁법 없이 상법전 안에 경쟁법이 편입 지분 10% 한도 내 상호출자 지배구조 허용 지주회사는 주주·채권자 보호 위해 계열사 현황 및 연결회계자료 공시			
국가	경쟁법상 규제	회사법상 규제																			
미국	서면법 : 카르텔 같은 부당거래행위 금지, 기업집단 독점화 금지 클레이튼법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규제	주의·충실의무 :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이익 착취행위 규제 회사기회유용 금지 : 지주회사의 자회사 기회유용 금지																			
일본	독점금지법 "사업지배력이 과도한" 지주회사 규제(제9조), 금융회사의 타국내 회사 지분보유 금지(공정위 허가시 지분보유 허용)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한 해외 자회사 감시체계 구축 요구 자회사의 일탈행위와 자회사 이익 착취 행위는 선관주의의무로 규제																			
영국	경쟁법 : 경쟁제한적 지주회사 설립 금지 (제101조), 지주회사의 시장지배지위 남용 금지 (제102조)	지주사-자회사 간 관계 규정만 있고 지주회사 사전규제 없음 정관으로 지주사 설립 적법성 인정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 경쟁제한 및 경제력 집중 우려 기업에 한해 연방카르텔청이 사전 심사 → 기업결합 승인·무효 결정(제22조)	주식법 : 콘체른(기업연합체) 및 지배-종속관계 기업집단 등에 대해 정의(제15~18조)하고 모회사(지주사) 이사회에 주의·감시의무 부과																			
프랑스	* 별도 경쟁법 없이 상법전 안에 경쟁법이 편입 지분 10% 한도 내 상호출자 지배구조 허용 지주회사는 주주·채권자 보호 위해 계열사 현황 및 연결회계자료 공시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사전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완화 																				

1 현황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설립허용(1998) 이후, 지주회사의 경제력집중 방지를 위해 부채비율, 금산분리, 지분율 등의 사전행위규제 시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사전행위규제 조항〉

구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사전행위규제 조항	관련조항
부채비율규제	자본총액 2배 이상 부채를 보유할 수 없음	제18조 제2항 제1호
지분 규제	자회사의 주식 50% 이상 보유해야함	제18조 제2항 제2호
	계열사 외의 회사 주식 5% 이상 보유 금지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사 주식 소유 행위 금지	제18조 제2항 제3호
금산분리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업 외의 회사 주식 소유 금지	제18조 제2항 제4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회사 주식 소유 금지	제18조 제2항 제5호
자회사·증손회사 규제	자회사는 손자회사 주식 50% 이상 보유해야함	제18조 제3항 제1호
	자회사는 손자회사 외의 회사 주식 소유 금지	제18조 제3항 제2호
	자회사는 금융업 손자회사를 보유할 수 없음	제18조 제3항 제3호
	손자회사는 계열사 주식 소유 금지	제18조 제4항 제1호

-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규제는 주요국 중 오직 한국만 시행 중이며, G5 국가들은 주로 회사법 등을 통해 사후규제만 시행
 - (미국) 20세기 말까지 일부 특별법으로 지주회사 사전규제를 시행했으나, 사전규제가 산업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2005년 관련규제 모두 폐지하고 회사법상 이사의 선관의무, 충실의무 등으로 사후 규제
 - (일본) 경쟁법을 통해서 지주회사 설립을 금지해왔던 일본은 1997년 이후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규제를 모두 폐지하였으며, 회사법상 책임규정을 통해 지주회사와 그 임원에 대한 사후규제만 시행
 - (영국) 회사법 통해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지배관계에 대한 정의규정만 두고 있을 뿐 지주회사 행위에 대한 규제는 시행하지 않음
 - (독일) 경쟁제한방지법을 통해 경제력집중이 우려되는 기업에 한해 기업결합시 그 주체가 사전에 신고하도록 규제
 - * 연방카르텔청은 사전 심사를 통해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심사 결과 해당 기업결합으로 인해 시장지배력 형성이 우려되는 경우 경쟁제한방지법 제22조 제5항에 근거하여 연방카르텔청은 기업결합을 무효화

- (프랑스) 다른 국가들과 달리 프랑스의 경우 경쟁법이 상법전에 편입되어 있고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회사법이 규제

〈주요국 지주회사 사전규제 법제 및 특징〉

국가	경쟁법상 규제	회사법상 규제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셔먼법 : 카르텔 같은 부당거래행위 금지, 기업집단 독점화 금지 • 클레이튼법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충실의무 :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이익 착취행위 규제 • 회사기회유용 금지 : 지주회사의 자회사 기회 유용 금지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점금지법 "사업지배력이 과도한" 지주회사 규제 (제9조), 금융회사의 타국내 회사 지분보유 금지(공정위 허가시 지분보유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한 해외 자회사 감시체계 구축 요구 • 자회사의 일탈행위와 자회사 이익 착취 행위는 선관주의의무로 규제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법 : 경쟁제한적 지주회사 설립 금지 (제101조), 지주회사의 시장지배지위 남용 금지(제10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주사-자회사 간 관계 규정만 있고 지주회사 사전 규제 없음 • 정관으로 지주사 설립 적법성 인정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제한방지법 : 경쟁제한 및 경제력 집중 우려 기업에 한해 연방카르텔청이 사전 심사 → 기업결합 승인·무효 결정(제2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법 : 콘체른(기업연합체) 및 지배-종속관계 기업집단 등에 대해 정의(제15~18조)하고 모회사(지주사) 이사회에 주의·감시의무 부과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경쟁법 없이 상법전 안에 경쟁법이 편입 • 지분 10% 한도 내 상호출자 지배구조 허용 • 지주회사는 주주·채권자 보호 위해 계열사 현황 및 연결회계자료 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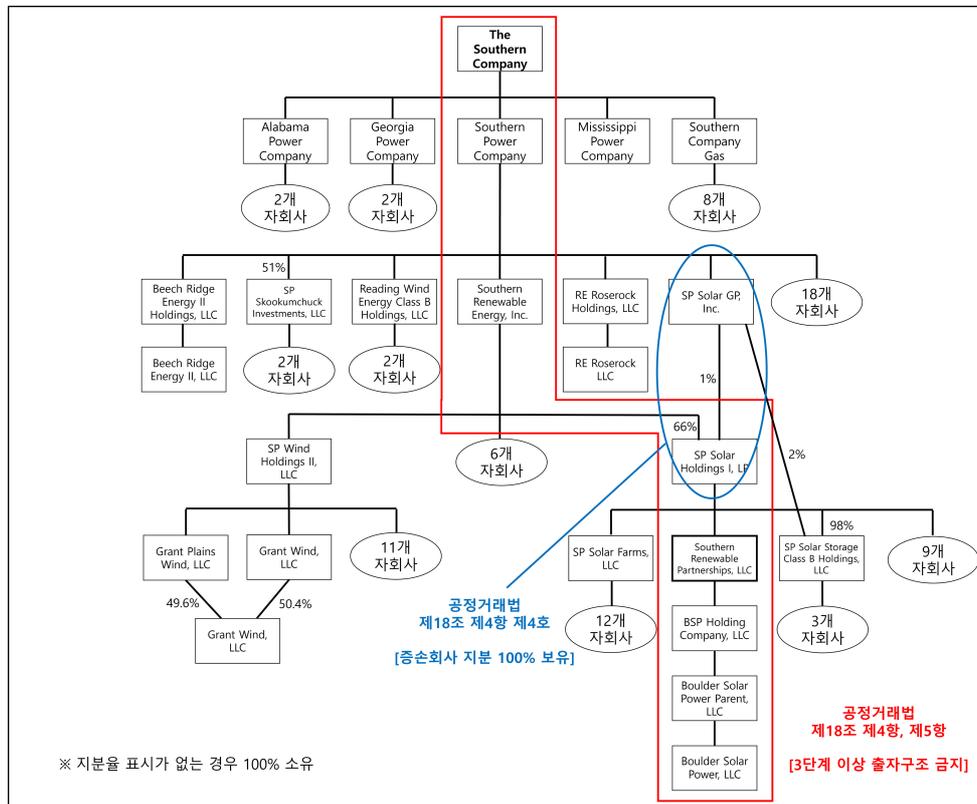
2 문제점

-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의 의결권행사 규제와 관련, 계열사간 합병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해외사례 없음
- 미국에서 주식의결권은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독과점 우려가 있는 경우 연방통상위원회(FTC : Federal Trade Commission) 또는 이해당사자 소송에 의해서만 제한
 - * 美 클레이튼법 제7조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경쟁을 감소시키거나 독점을 형성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의 타기업 주식 취득을 금지
- 일본은 경제력집중 억제책으로서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대기업집단 계열금융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따라서 대기업집단 계열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은 주주로서 의결권을 적극 행사

□ **(지배구조 규제)** 해외 주요국들은 지주회사에 대한 사후규제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서는 다양한 지주회사 형태와 지배구조가 존재

- 지주회사가 다수의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나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지배하는 구조가 있는데, 이와 같은 지배구조는 기업 이윤 극대화 내지는 경영 효율성을 고려한 의사결정의 결과
- 경영 효율성을 위해 중간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3단계 이상의 지배관계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으나,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3단계까지의 지배관계만 허용하고 있어 기업집단이 지배구조에 관한 경영전략을 수립하는데 제약

〈미국 The Southern Company 지배구조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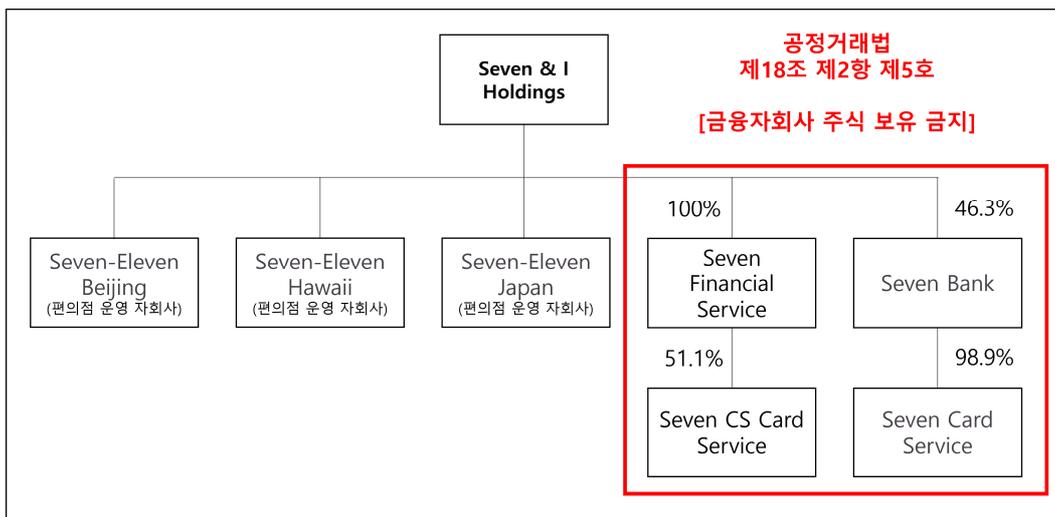
출처: The Southern Company Annual Report (2022)

◆ 총 7단계 지배관계 지주회사 사례 (한국에서는 금지)

- Southern Power Company가 Southern Renewable Energy를 통해서 중간지주회사인 SP Solar Holdings I, LP(이하 SP Holdings)를 지배
- SP Holdings는 Southern Renewable partnership LLC를 통해 또 다른 중간지주회사인 BSP Holding Company LLC(이하 BSP Holdings)를 지배
- BSP Holdings는 손자회사로 Boulder Solar Power LLC를 지배하고 있는데, Boulder Solar Power LLC는 그룹 지주회사로부터 총 7단계의 지배관계를 거쳐 지배를 받음

- 특히 프랑스는 10%의 한도에서 회사 간 상호주식보유를 허용하는데(상법 제233조의 29부터 제233조의31),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출자구조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원천적으로 금지
- (금산분리) 주요국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업 자회사 보유(투자)나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업 자회사 보유(투자)를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사와 비금융사 간 시너지 효과 제고 가능
- 한국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체제에서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철저히 분리하고 있어 이러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일본 Seven & i Holdings 금융자회사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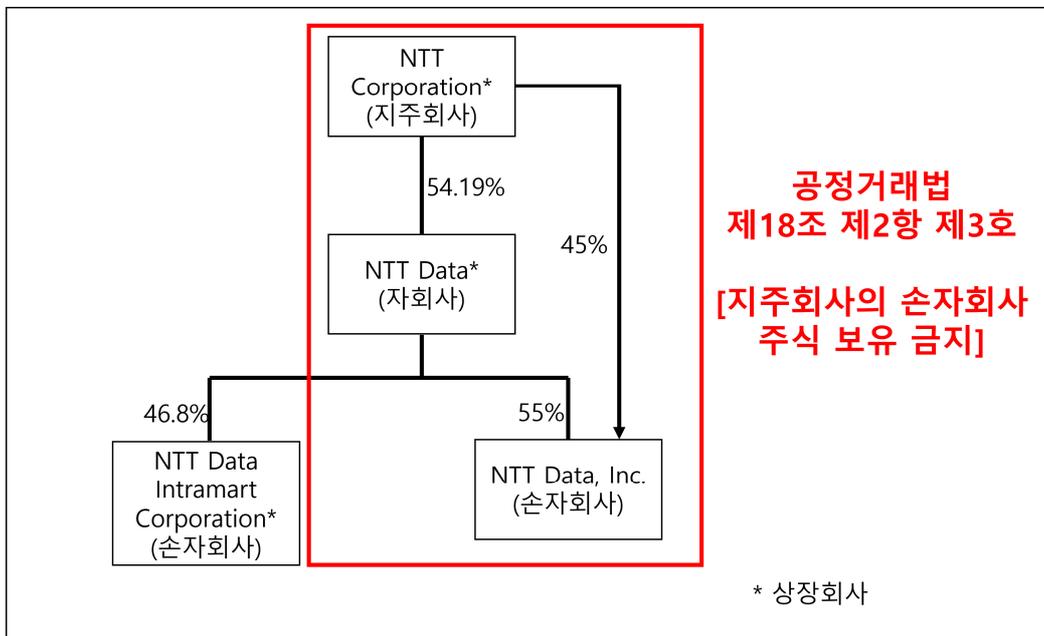
출처: Seven & i Holdings IR 자료 (FY2022 기준)

◆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사례 (한국에서는 금지)

- Seven Holdings는 총 4개의 주요 금융자회사(Seven Bank, Seven Financial Service, Seven Card Service, Seven CS Card Service)를 보유

- **(지분을 규제)** 한국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의무보유지분을 규정을 두고 있어서, 기업집단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할 때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 함
-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의 50% 이상(상장회사의 경우 30%)을 보유하고, 자회사는 손자회사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 사실상 자회사를 지배하고 있더라도 지분을 50%까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야 함
- 지분을 규제 때문에 지주회사체제에 있는 기업들은 자회사 지분을 강제로 취득하거나 처분해야 하는 불이익을 겪어야 함

〈일본 NTT 주요 자회사 지분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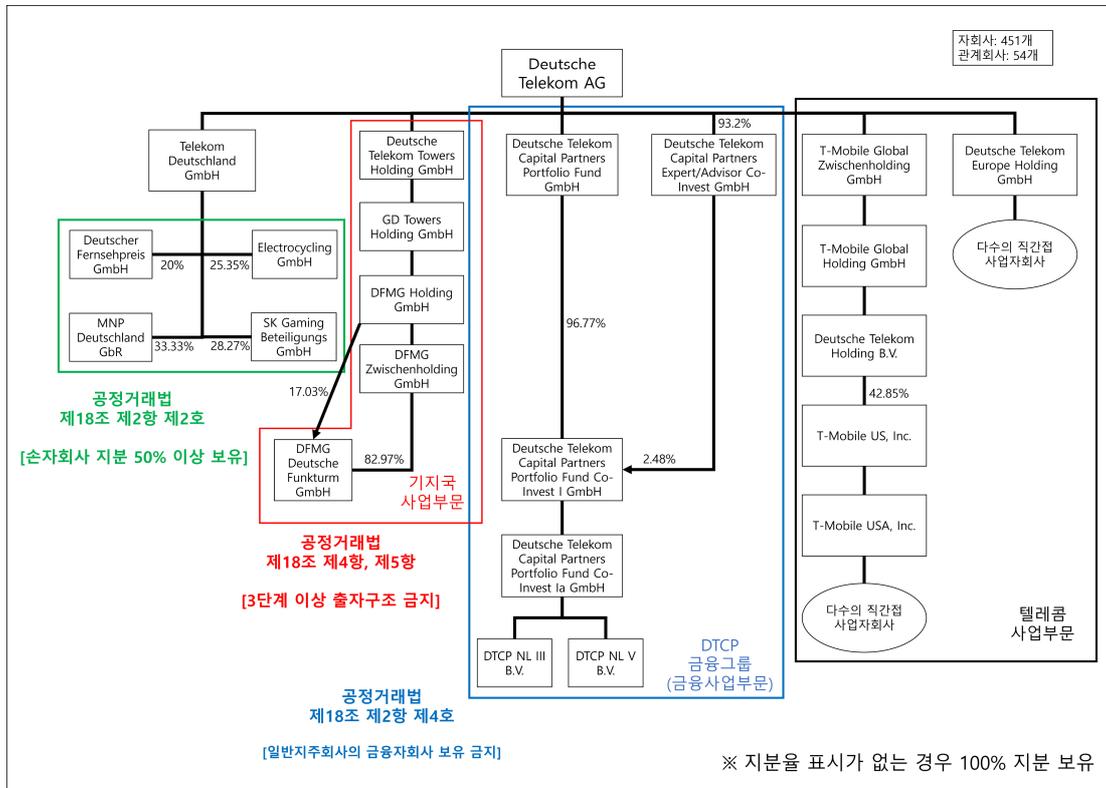


출처: NTT 홈페이지

◆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사례**

- NTT그룹 지주회사인 NTT Corporation은 NTT Data 자회사인 NTT Data Inc 지분을 45% 소유하고 있음
-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지배구조는 불가능한데,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3호는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

독일 Deutsche Telekom 지배구조 사례



출처: Deutsche Telekom 사업보고서 (2022)

◆ Telekom Deutschland 사례 (한국에서는 각종 지주회사 행위규제 적용 대상임)

- 자회사로 편입되어 있는 회사 중 3개사(Deutscher Fernsehpreis, Electrocyling, SK Gaming Beteiligungs)는 지분율이 30% 이하
- Deutsche Telekom AG는 Deutsche Telekom Capital Partners 금융그룹(이하 DTCP금융그룹)을 지배
- T-Mobile Global Zwischenholding와 Deutsche Telekom Europe Holding는 중간지주회사로서 각각 미국과 유럽 지역 이동통신사업을 영위하며, Deutsche Telekom Towers Holdings는 통신 기지국 사업을 영위

3

개선방안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사전규제 폐지

II-2	대규모기업집단법제 전면 재검토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관련법령	<table border="1"> <tr> <th data-bbox="367 450 509 495">적용 대상</th> <th data-bbox="509 450 1342 495">공정거래법상 규제 내용</th> </tr> <tr> <td data-bbox="367 495 509 775" rowspan="4">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td> <td data-bbox="509 495 1342 539">제8조의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td> </tr> <tr> <td data-bbox="509 539 1342 584">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td> </tr> <tr> <td data-bbox="509 584 1342 629">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td> </tr> <tr> <td data-bbox="509 629 1342 674">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td> </tr> <tr> <td data-bbox="367 674 509 719">공시대상기업집단</td> <td data-bbox="509 674 1342 719">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td> </tr> <tr> <td data-bbox="367 719 509 763"></td> <td data-bbox="509 719 1342 763">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td> </tr> <tr> <td data-bbox="367 763 509 808"></td> <td data-bbox="509 763 1342 808">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td> </tr> <tr> <td data-bbox="367 808 509 853"></td> <td data-bbox="509 808 1342 853">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td> </tr> <tr> <td data-bbox="367 853 509 898"></td> <td data-bbox="509 853 1342 898">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td> </tr> </table>	적용 대상	공정거래법상 규제 내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8조의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공시대상기업집단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적용 대상	공정거래법상 규제 내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8조의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공시대상기업집단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 요약 ■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대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1986년 기존 공정거래법에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신설 ● 미국, 일본, 프랑스는 기업집단법제를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음. 미국의 경우 셔먼법 상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가지고 있으나, 이를 제외한 지주회사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는 없음 ● 독일은 주식법 상 기업집단법제인 콘체른에 대한 규제가 별도로 존재하여, 개별사업자에 대한 행위규제와 집단에 대한 규제 공존 ● 대기업집단 중 지주회사가 다수의 (손)자회사를 거느린 지주회사 체제에 대해 별도의 법제를 둔 국가도 비교대상 중 한국이 유일 ● 회사법의 주주대표소송과 관련, 대기업집단의 모회사 주주와 자회사 주주 간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해 한국만 다중대표소송을 폭넓게 인정 <p style="text-align: center;">〈대규모기업집단 관련 주요국 입법례〉</p> <table border="1" data-bbox="379 1574 1353 1951"> <thead> <tr> <th></th> <th>한국</th> <th>독일</th> <th>일본</th> <th>프랑스</th> <th>영국</th> <th>미국</th> </tr> </thead> <tbody> <tr> <td>대기업집단 규제 법제</td> <td>○ [공정거래법]</td> <td>△ [주식법 안에 존재]</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지주회사 규제 법제</td> <td>○ [공정거래법]</td> <td>×</td> <td>×</td> <td>×</td> <td>×</td> <td>△ 금융지주회사 규율만 존재</td> </tr> <tr> <td>다중대표 소송</td> <td>다중대표 소송 도입 (상법)</td> <td>대표소송만 인정</td> <td>다중대표 소송은 완전모자회사만 인정</td> <td>대표소송만 인정</td> <td>판례에서 예외적으로 허용</td> <td>판례에서 예외적으로 허용</td> </tr> </tbody> </table>			한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	대기업집단 규제 법제	○ [공정거래법]	△ [주식법 안에 존재]	×	×	×	×	지주회사 규제 법제	○ [공정거래법]	×	×	×	×	△ 금융지주회사 규율만 존재	다중대표 소송	다중대표 소송 도입 (상법)	대표소송만 인정	다중대표 소송은 완전모자회사만 인정	대표소송만 인정	판례에서 예외적으로 허용	판례에서 예외적으로 허용
	한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																								
대기업집단 규제 법제	○ [공정거래법]	△ [주식법 안에 존재]	×	×	×	×																								
지주회사 규제 법제	○ [공정거래법]	×	×	×	×	△ 금융지주회사 규율만 존재																								
다중대표 소송	다중대표 소송 도입 (상법)	대표소송만 인정	다중대표 소송은 완전모자회사만 인정	대표소송만 인정	판례에서 예외적으로 허용	판례에서 예외적으로 허용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집단기업법제 관련 규제 전면 재검토 																													

1 현황

- 자본주의가 고도화되고 기업의 경영효율 추구나 이윤 증대를 위해 자연스럽게 대규모 기업집단이 등장했으나, G5 중 한국처럼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법제를 별도로 두고 있는 국가는 없음
- 한국은 대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1986년 기존 공정거래법에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신설
- 미국, 일본, 프랑스는 한국처럼 대기업집단 법제를 별도로 두지 않으며, 개별 사업자들의 경쟁 제한적 행위들은 독점금지법으로 규율
- 독일은 주식법 안에 기업집단(콘체른)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음
 - * 독일 콘체른법은 별도의 단일법이 아니고 ‘주식법’(회사법 기능) 제3편을 지칭

〈대기업집단에 관한 법제〉

한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
○ [공정거래법]	△ [주식법 내]	×	×	×	×

- 대기업집단 중 지주회사가 다수의 (손)자회사를 거느린 지주회사 체제에 대해 별도의 법제를 둔 국가도 비교대상 중 한국이 유일
- 한국은 지주회사에 각종 사전 행위규제(부채비율 규제, 지분율 규제, 금산분리, 자회사·증손회사 규제 등)를 두며, 이 외에도 각종 공시부담 의무 부과
- 미국은 금융지주회사에 한해 일부 규제가 있지만,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는 없으며, 1890년 셔먼법을 비롯한 독점금지법제에 의해 규율

〈지주회사 관련 법제〉

한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
○ [공정거래법]	×	×	×	×	△ 금융지주회사 규율만 존재

- 회사법의 주주대표소송과 관련, 대기업집단의 모회사 주주와 자회사 주주 간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해 한국만 다중대표소송을 폭넓게 인정
 - *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한국은 2020년 상법 개정을 통해 도입(상법 제406조의2)

- 일본도 회사법상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나, 한국과 달리 100% 완전 모자회사처럼 자회사의 독립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인정
- 영국과 미국은 자회사를 독립법인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판례에서 예외적으로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며, 독일과 프랑스는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지 않음

〈다중대표소송 지주회사 관련 법제〉

한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
다중대표소송 도입(상법)	대표소송만 인정	다중대표소송은 완전모자회사만 인정	대표소송만 인정	판례에서 예외적으로 허용	판례에서 예외적으로 허용

2 문제점

- 대규모기업집단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행위규제들은 비교대상 중 한국만 있는 유일한 규제
- G5 국가들은 대기업집단 여부에 관계없이, 개별 사업자나 법인들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경쟁을 제한하여 독점이나 카르텔의 폐해를 일으키는 경우에 대해 경쟁방지법을 통해 시장 질서를 규율
- 한국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만 별도 추출하여 공정거래법으로 각종 규제를 부과하고 있으나 규제 명목이나 실효성이 희박
- 공정거래법에 대규모기업집단 규제가 신설된 1986년 이후 대규모기업집단 기업들은 각종 투자와 계열회사 관리에 많은 제약을 부담
- 상호출자나 순환출자 금지, 계열사 보유지분 규제,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등의 규제들은, 이 행위들이 대규모기업집단이 아닌 기업들이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임 (이철송, 대규모기업집단 법제의 법리적 평가, 2016)

- G5 모두 일반법인 회사법으로 대기업집단을 규율하는데, 한국만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별도의 규제를 양산
 - 한국은 상법에 다중대표소송을 두면서까지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는 상황
 - 프랑스는 오히려 개별회사 손익을 넘어서서, 기업집단 전체의 이익을 인정하는 판례(로젠블롬 판례)가 나올 정도로 기업집단의 이익을 보장

3 개선방안

- 글로벌 국가들처럼 대기업집단에 대한 별도의 규제나 지주회사 행위규제를 두는 법제 대신, 일반법인 회사법으로 규율
- 카르텔이나 독점 등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는 기업 행위에 대해서는 G5처럼 경쟁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임

II-3	배임죄 적용 완화																																			
소관부처	법무부																																			
관련법령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상법 제622조, 특경법 제3조																																			
■ 요약 ■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5 중 美·英은 배임죄 처벌규정이 없고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사기죄로 대응하며, 韓·獨·日·佛 대륙법계 4개국은 형법에 배임죄를 명문화하고 있으나 내용이나 적용방식에 있어 차이를 보임 ● 6개국 중 (일반)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특별배임죄가 모두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며 한국의 특경법상 형량은 살인죄와 동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15%;">한국</th> <th style="width: 15%;">독일</th> <th style="width: 15%;">일본</th> <th style="width: 15%;">프랑스</th> <th style="width: 15%;">영국</th> <th style="width: 15%;">미국</th> </tr> </thead> <tbody> <tr> <td>형법 일반 배임</td> <td>5년 이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 벌금 <제355조 제2항></td> <td>5년 이하의 자유형 혹은 벌금형</td> <td>5년 이하 징역 혹은 50만엔 이하 벌금</td> <td>3년 구금형 혹은 375,000유로 벌금형</td> <td>20년 이하 유기징역 혹은 벌금형</td> <td>10년 이하 자유형 혹은 벌금</td> </tr> <tr> <td>형법 업무상 배임</td> <td>10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56조></td> <td>×</td> <td>×</td> <td>7년 구금형 혹은 750,000유로 벌금</td> <td>×</td> <td>×</td> </tr> <tr> <td>회사법 특별 배임</td> <td>10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 <상법 제622조></td> <td>×</td> <td>10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엔 이하 벌금</td> <td>5년 금고 혹은 375,000유로 벌금</td> <td>×</td> <td>×</td> </tr> <tr> <td>특경법</td> <td>50억 이상 무기나 5년 이상 징역 5억~50억 미만 3년 이상 유기징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한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	형법 일반 배임	5년 이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 벌금 <제355조 제2항>	5년 이하의 자유형 혹은 벌금형	5년 이하 징역 혹은 50만엔 이하 벌금	3년 구금형 혹은 375,000유로 벌금형	20년 이하 유기징역 혹은 벌금형	10년 이하 자유형 혹은 벌금	형법 업무상 배임	10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56조>	×	×	7년 구금형 혹은 750,000유로 벌금	×	×	회사법 특별 배임	10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 <상법 제622조>	×	10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엔 이하 벌금	5년 금고 혹은 375,000유로 벌금	×	×	특경법	50억 이상 무기나 5년 이상 징역 5억~50억 미만 3년 이상 유기징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	×	×	×	×
	구분	한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																													
형법 일반 배임	5년 이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 벌금 <제355조 제2항>	5년 이하의 자유형 혹은 벌금형	5년 이하 징역 혹은 50만엔 이하 벌금	3년 구금형 혹은 375,000유로 벌금형	20년 이하 유기징역 혹은 벌금형	10년 이하 자유형 혹은 벌금																														
형법 업무상 배임	10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56조>	×	×	7년 구금형 혹은 750,000유로 벌금	×	×																														
회사법 특별 배임	10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 <상법 제622조>	×	10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엔 이하 벌금	5년 금고 혹은 375,000유로 벌금	×	×																														
특경법	50억 이상 무기나 5년 이상 징역 5억~50억 미만 3년 이상 유기징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벌규정 수의 경우, 조사대상 6개국 중 한국은 형법상 배임 및 업무상 배임에 회사법상 특별배임 규정을 두며 여기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 가중 규정까지 두고 있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10%;">한국</th> <th style="width: 10%;">독일</th> <th style="width: 10%;">일본</th> <th style="width: 10%;">프랑스</th> <th style="width: 10%;">영국</th> <th style="width: 10%;">미국</th> </tr> </thead> <tbody> <tr> <td>형법 일반배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형법 업무상 배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회사법 특별배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특경법</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한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	형법 일반배임	○	○	○	○	△	△	형법 업무상 배임	○	×	×	○	×	×	회사법 특별배임	○	×	○	○	×	×	특경법	○	×	×	×	×	×	
구분	한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																														
형법 일반배임	○	○	○	○	△	△																														
형법 업무상 배임	○	×	×	○	×	×																														
회사법 특별배임	○	×	○	○	×	×																														
특경법	○	×	×	×	×	×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임죄는 사적 자치라는 민법상의 기본가치를 침해하고 형법이 최후수단이라는 대명제에도 어긋날 소지가 있는 만큼 기업인들의 배임 리스크를 덜 수 있는 제도 개선 																																			

1 현황

□ (배임죄 채택 여부) 韓·獨·日·佛은 형법에 배임죄를 명문화했고 美·英은 사기죄로 처벌하거나 私人 간 손해배상 방식으로 해결

○ 미국은 기업인 배임행위 발생시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보며, 이와 별개로 ‘우편사기죄’를 통한 형사처벌도 가능해서 별도 배임죄 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

* 과거 美 연방헌법전(United States Code)의 ‘우편사기죄’(Mail and Wire Fraud)가 배임죄 유사 사안의 형벌 근거조항 역할을 했으나, 2010년 Skilling 판결로 적용범위 제한

* 배임죄는 사적 자치라는 민법상의 기본가치를 침해하고 형법이 최후수단이라는 대명제에도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보며, 오히려 배임죄가 통상의 민사문제를 형사화시킨다고 비판

○ 영국도 배임죄 사안에 대해 ‘지위 남용에 의한 사기죄’나 ‘절도죄’로 처벌

〈국가별 형법상 배임죄 특징〉

구분	주요내용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임죄 구성요건 :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타인의 사무에 대한 설명이 없음), ②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③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 ④ 본인(회사)에게 손해를 가함, ⑤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 → 구성요건 지나치게 포괄적 처벌대상(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은 기업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음 재산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까지도 배임죄 인정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과 달리 타인의 사무처리에 대한 근거를 법에 명백히 규정 (“법률, 관청의 위임이나 법률행위, 신용관계 등”) 배임죄의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으며,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나 상법상 특별배임죄가 없음 배임죄를 적용한 사건 자체가 많지 않다는 의견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상 배임죄’는 없지만, 회사법상 특별배임죄 규정을 두고 있음 ‘타인의 사무’를 재산적 사무로 한정시켜서 배임죄의 가벌성을 제한 배임죄를 목적범으로 규정 → 가해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만 배임죄 적용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 배임행위에 대해 회사재산남용죄가 적용(韓 특별배임죄에 해당)되며, 그 외 배임은 형법상 배임죄가 적용 1985년 프랑스 대법원 로젠블롬 판결 : 배임죄 성립 여부 판단시, 당해 기업뿐 아니라 소속그룹 전체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례 형성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韓·獨·日의 형법상 배임죄 규정이 없고 사인 간 손해배상으로 해결 신임관계 위반이나 이사 배임은 美연방법 우편사기죄(Mail Fraud) 적용 * United States Code Title 18 Chapter 63 → 우편사기죄 10개 조문 중 제1341조, 제1343조, 제1346조가 한국 배임죄와 유사 * 2010년 연방대법원 Skilling 판결후 우편사기죄 적용범위 축소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국은 횡령·배임죄를 별도 성문법으로 규정하지 않음 韓·獨·日의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사안은 ‘절도’나 ‘사기’ 죄로 규율 현재는 Fraud Act 2006의 지위남용에 의한 사기죄가 기본적으로 적용

- (처벌규정 수) 조사대상 6개국 중 한국의 경우, 형법상 배임① 및 업무상 배임②에 회사법상 특별배임 규정③을 두고 있으며 여기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 가중규정④까지 두고 있음

구분	한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
형법 일반배임	○	○	○	○	△	△
형법 업무상 배임	○	×	×	○	×	×
회사법 특별배임	○	×	○	○	×	×
특경법	○	×	×	×	×	×

- (처벌 형량) 배임행위에 대한 법정 형량은 6개국이 유사한 수준이나, 한국은 특경법과 상법상 특별배임죄 존재 때문에 형량이 무거움

- 한국 특경법은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의 가중규정 역할을 하며, 50억 이상 범죄에 대해서는 살인죄(5년 이상 징역)와 동일한 형량

구분	한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
형법 일반배임	5년 이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 벌금 <제355조 제2항>	5년 이하의 자유형 혹은 벌금형	5년 이하 징역 혹은 50만엔 이하 벌금	3년 구금형 혹은 375,000유로 벌금형	20년 이하 유기징역 혹은 벌금형	10년 이하 자유형 혹은 벌금
형법 업무상 배임	10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56조>	×	×	7년 구금형 혹은 750,000 유로 벌금	×	×
회사법 특별배임	10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 <상법 제622조>	×	10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엔 이하 벌금	5년 금고 혹은 375,000유로 벌금	×	×
특경법	50억 이상 무거나 5년 이상 징역 5억~50억 미만 3년 이상 유기징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	×	×	×	×

2 문제점

- 한국 배임죄는 광범위한 처벌 대상, 임무 위배라는 막연한 죄목, 쉬운 고발에 따른 빈번한 기소, 높은 무죄율 등이 문제로 지적
- (쉬운 고발) 이해당사자가 아니어도 배임죄 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私人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상대측의 정보를 캐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함
- (짚은 기소) 검찰은 고발이 들어온 이상 사건을 검토해야 하므로, 통계상 배임죄 기소 건수가 높게 나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무죄율도 높게 나타남
 - * 2009년 손해액 5억원 이상의 **특경법상 배임사건** 선고자 379명 중 59명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음(1심 무죄율 15.6%)
 - * 손해액 5억원 미만의 **형법상 배임사건**에서도 1심 선고자 1,492명 중 124명이 무죄선고를 받아 8.3%의 무죄율 기록
 - * 2009년 전체 형사사건의 평균 무죄율 2.2%와 비교했을 때, 특경법상 배임사건은 무죄율이 7.1배 높고 형법상 배임사건도 3.8배 높음 (대법원 통계, 2013)
- (막연한 죄목) 배임죄는 ‘임무 위배’라는 막연한 형벌기준 때문에 일선의 혼란을 야기
 - 형법에는 본인에게 손해를 가해야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법원은 위험 야기 가능성만으로 배임죄 처벌 판결을 내림
- (기업인 부담 가중) 한국은 배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례가 많아서 기업인들은 경영판단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특경법 가중규정으로 형량 급등의 부담도 큼

〈배임죄 구성요건 관련 3개국 주요 특징〉

배임죄 구성요건	한국	독일	일본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타인의 사무’에 대한 설명이 없음 → 기업 울타리 안의 모든 구성원이 배임죄 대상	타인의 사무범위 명백히 규정 → 법률 및 관청의 위임이나 법률행위, 신용관계 등으로 제한	‘타인의 사무’를 재산적 사무로 한정
②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임무위배 행위 여부를 법원이 사후적으로 판단	배임죄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음	
③ 재산상 이익 취득 혹은 제3자로 하여금 이익 취득케 함 ④ 본인(회사)에게 손해를 가함	‘재산상 손해’에 대해, 우리 법원은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위험 초래 가능성까지 포함	재산상 이익 취득은 요구하지 않음	
⑤ 고의	미필적 고의 포함		
〈종합〉	배임죄 구성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	배임죄 처벌 가능성을 제한	배임죄 처벌 가능성을 제한

3

개선방안

- 6개국 중 (일반)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특별배임죄가 모두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며 한국의 특경법상 형량은 살인죄와 동일
-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신속한 경영판단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데, 배임죄 리스크가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는 족쇄로 작용
- 기업 경영활동은 항시 손해발생 위험이 있는 만큼, 기업인들의 배임 리스크를 덜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

II-4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소관부처	법무부																				
관련법령	(대법원 판례)																				
■ 요약 ■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판례법에 명문화, 독일은 주식법에 명문으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은 주식법 제93조에 명문으로 도입했고 미국은 1988년 텔라웨어주 대법원 판례로 처음 원칙이 수립된 이래, 법원에서 이사의 경영책임을 판단하는 일관되고 주요한 기준으로 작용 ● 판례로 경영판단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사후적으로 기업인의 경영판단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지 여부에서 국가별 차이를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과 일본은 기업인의 경영판단에 대해 법원이 사후적으로 판단을 하는 반면, 영국은 경영판단에 대해 이사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경우 법원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제한 • 미국의 경우 이사의 재량권 남용만 아니면 법원은 이사의 경영판단을 존중(“경영판단 추정” 원칙)하며, 경영판단 추정을 번복하려 할 경우 번복을 원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12.5%;">한국</th> <th style="width: 12.5%;">독일</th> <th style="width: 12.5%;">일본</th> <th style="width: 12.5%;">프랑스</th> <th style="width: 12.5%;">영국</th> <th style="width: 12.5%;">미국</th> </tr> </thead> <tbody> <tr> <td>성문화</td> <td>판례상 수용</td> <td>주식법에 명문화</td> <td>판례상 수용</td> <td>판례상 수용</td> <td>사실상 수용</td> <td>판례상 수용</td> </tr> <tr> <td>법원의 사후적 판단</td> <td>○</td> <td>○</td> <td>○</td> <td>(논쟁有)</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한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	성문화	판례상 수용	주식법에 명문화	판례상 수용	판례상 수용	사실상 수용	판례상 수용	법원의 사후적 판단	○	○	○	(논쟁有)	×
구분	한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															
성문화	판례상 수용	주식법에 명문화	판례상 수용	판례상 수용	사실상 수용	판례상 수용															
법원의 사후적 판단	○	○	○	(논쟁有)	×	×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인의 경영판단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과 책임이 엄격하여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신산업 진출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판단원칙 :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의의무를 다해 경영상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는 비록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 ● 대법원 판례에서는 경영판단원칙을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대법원은 2004년 처음 경영판단원칙이 인용되었으나, 이후 '15년까지 경영판단관련 배임죄 판결 35건 중 18건만 이 원칙이 고려됨 • 특히 우리나라 대법원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의 행위를 정당한 경영판단으로 추정하지 않아 이사 스스로 경영판단에 과오가 없음을 입증해야 함 																				

1

현황

- G5 중 독일이 주식법에 경영판단원칙을 명문으로 도입했고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이사 신인의무에 근거해 판례로 적용

* 경영판단원칙 :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의의무를 다해 경영상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는 비록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의무위반으로 보지 않음

- 독일은 주식법 제93조에 명문으로 도입했고 미국은 1988년 델라웨어주 대법원 판례로 처음 원칙이 수립된 이래, 법원에서 이사의 경영책임을 판단하는 일관되고 주요한 기준으로 작용
- 미국의 경우 미국법률협회(ALI)의 기업지배구조원칙, 개정 모범회사법(RMBCA) 및 캘리포니아주 회사법은 경영판단원칙을 성문으로 규정하였으나, 대부분의 주는 성문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판례법상의 원칙으로 운용
- 일본은 일반적으로 ① 해당 상황에서 보통의 경영자가 할 것으로 생각되는 정보를 수집하고 ② 해당 경영자가 그 정보를 토대로 주주에게 최선인 이익을 생각하며 선택한 경영 결정이라면 ③ 사후적으로 그 결과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도 해당 이사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판례상 경영판단의 원칙을 인정

- 판례로 경영판단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사후적으로 기업인의 경영판단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지 여부에서 국가별 차이를 보임

- 미국의 경우 이사의 재량권 남용만 아니면 법원은 이사의 경영판단을 존중(“경영판단 추정” 원칙)하며, 경영판단 추정을 번복하려 할 경우 번복을 원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함
- 미국의 경영판단 원칙은 사법적 판단을 배제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일본은 사법심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차이를 보이며, 특히 일본 법원은 경영판단 원칙이 이사의 과실책임을 변경하거나 이사의 주의의무를 경감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 유력
- 영국은 판례를 통해 법원이 회사의 내부경영(이사회가 선의로 내린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표명했고 2006년 회사법 개정을 위한 Law Commission에서도 영국 법원은 이사의 경영판단에 대해 사후적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이 기준을 계속 적용할 것이라고 판단

2 문제점

- 기업인의 경영 활동에 대한 비우호적인 법·제도 환경이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신산업 진출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

 - 2019년 한국의 기업가정신은 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로 하위권
 - * GEI(Global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Institute)의 기업가정신 지수에서 한국의 취약점은 기업가에 대한 미디어 관심은 높지만 사회적 지위가 매우 낮고 기업가 직업 선호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

- 한국 법원은 기업인의 경영판단에 대한 법적 판단과 책임을 엄격히 적용

 - 2011~2021년 중 ‘경영판단 원칙’을 언급한 대법원 판례는 총 89건이며 형사 56건, 민사 33건임(최준선 성균관대 교수, 「대법원 경영판단의 원칙 재판 분석」 2022.5)
 - 한국 법원은 경영판단 원칙에 소극적으로, 경영판단원칙을 언급한 대법원 판례 89건 중 55건(61.8%)으로 34건(38.2%)임
 - 형사재판은 경영판단원칙에 더욱 엄격하여, 42건(42건)이 14건(14건)의 3배임

- 한국 법원은 경영판단원칙 인용에 소극적이고 입증 책임도 이사가 부담해야 하나, 미국 법원은 ‘경영판단 추정 원칙’¹⁾을 통해 기업인의 경영판단을 존중

 - 법원이 경영 일선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는데, 고도의 경영적 판단이 요구되는 전문경영인들의 의사결정 내용을 법원이 사후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침
 - 미국 법원은 ‘경영판단 추정 원칙’을 기반으로 ▷필요한 절차(ex. 주총이나 이사회 적법 결의)를 밟았는지, ▷이사 재량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판단인지 등, 우리보다 간략하고 명확한 기준으로 판단
 - 이는 법원이 경영자의 전문적 판단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자제하는 것으로, 한국법원이 개별사안의 내용을 세세하게 심사하고 미래 위험성까지 판단²⁾하는 것과는 차이가 큼

1) 미국법원은 “이사가 경영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에 기하여, 선의로, 그리고 그것이 회사의 최상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정직한 신뢰 위에서 행한 것이라고 ‘추정’”

2) 이사의 경영판단에 대해 “해당기업의 미래 재산상 손실 위험성”까지 법원이 판단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도2147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9148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도13689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20도2094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5도17067 판결 등 5건)

3

개선방안

-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고 광범위한 배임죄 규정 적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경영판단의 원칙을 회사법에 명문화해야 함
 -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만 있어도 행위를 처벌하는 배임죄 규정 때문에 기업인들은 모험적인 투자를 기피하고 보수적인 경영에만 주력
 - 경영판단의 원칙을 형법이 아닌 상법(회사편)에 명문화하여 기업인들의 경영행위에 대한 균형 있는 사법적 판단 유도하고 기업가 정신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미국 법원 사례에서처럼 경영판단의 원칙을 판단할 때 철저적인 하자 여부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

III 기업세제 국제비교 및 시사점

- III-1. 법인세제 개편
- III-2. 상속세 부담 완화 및 자본이득과세 제도 전환 검토
- III-3. 과감한 투자지원 세제 마련 필요

III-1	법인세제 개편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 요약 ■

현황
및
문제점

- (법인세 과표구간 비교) 국내 법인세 과세체계 : 과세표준구간 4단계
 - OECD 회원국 대부분 단일세율인데 반해, 4단계의 복잡한 과표구간 유지

〈OECD회원국 법인세 과표구간 수〉

과표구간 수	국 가	
1개	24개국	미국, 독일, 영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콜롬비아, 체코,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라트비아, 멕시코,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튀르키예
2개	11개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호주, 벨기에,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칠레,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3개	1개국	룩셈부르크
4개	1개국	한국
5개	1개국	코스타리카

- (법인세 최고세율 비교)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 : 26.4% (지방세 포함)
 - OECD 평균 23.1%, G7 평균 26.3% / 대한민국 26.4% (지방세 포함)

〈법인세 최고세율 국제비교 (지방세 포함, %)〉

구분	한국	OECD 평균	G7 평균							
			독일	일본	이태리	캐나다	미국	프랑스	영국	
세율	26.4	23.1	26.3	28.9	29.7	27.8	26.2	25.8	25.8	19.0

- 국내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 : 17.4% (지방세 포함)
 - OECD 평균 12.9%, G7 평균 10.8% / 대한민국 17.4% (지방세 포함)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

구분	한국	OECD 평균	G7 평균							
			일본	캐나다	영국	독일	미국	프랑스	이태리	
비중	17.4	12.9	10.8	19.6	13.7	9.9	9.5	7.9	8.3	6.4

개선방안

- 법인세를 ‘누진과세를 통한 재분배 정책수단’으로 삼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양할 필요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법인세제 개편

1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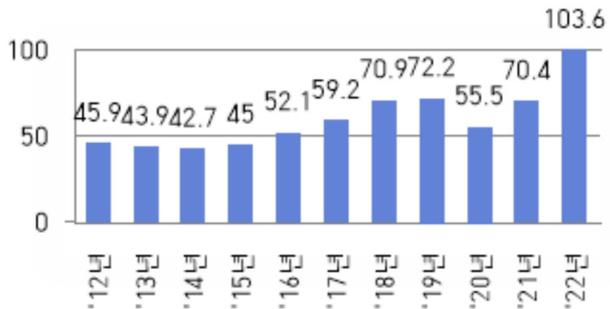
□ 국내 과세체계(과세표준구간별 세율) 및 10년간 법인세 징수액 추이

〈대한민국 법인세 과세체계〉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9%
2~2백억원	(2억원 초과 금액의) 19%
2백~3천억원	(200억원 초과 금액의) 21%
3천억원 초과	(3,000억원 초과 금액의) 24%

〈10년간 법인세 징수액 추이(지방세 제외)〉

(단위 : 조원)



2 문제점

□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글로벌 스탠더드 비교

○ 과세표준 구간 : OECD 회원국 대부분 단일세율

※ 과표구간이 1~2개인 국가가 35개국, 3개이상 국가 3개국
(제도경과 : (~'11년) 2개 → ('12년) 3개 → ('18년) 4개)

☞ 작년 기재부 세법개정안은 과표구간 단순화 추진.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기존 체계 유지

〈OECD회원국 법인세 과표구간 수〉

과표구간 수	국 가	
1개	24개국	미국, 독일, 영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콜롬비아, 체코,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라트비아, 멕시코,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튀르키예
2개	11개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호주, 벨기에,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칠레,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3개	1개국	룩셈부르크
4개	1개국	한국
5개	1개국	코스타리카

□ 법인세 최고세율 관련 글로벌 스탠더드 비교

● OECD 평균 23.1%, G7 평균 26.3% / 대한민국 26.4% (지방세 포함)

※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보다 3.3%p ↑, G7보다 0.1%p ↑

(제도경과 : '02년) 29.7% → ('05년) 27.5% → ('09년) 24.2% → ('18년) 27.5% → ('23년) 26.4%)

〈법인세 최고세율 국제비교(지방세 포함, %)〉

구분	한국	OECD 평균	G7 평균							
			독일	일본	이태리	캐나다	미국	프랑스	영국	
세율	26.4	23.1	26.3	28.9	29.7	27.8	26.2	25.8	25.8	19.0

국가	세율	순위	국가	세율	순위
콜롬비아	35.0%	1위	덴마크	22.0%	21위
포르투갈	31.5%	2위	그리스	22.0%	"
호주	30.0%	3위	노르웨이	22.0%	"
코스타리카	30.0%	"	슬로바키아	21.0%	24위
멕시코	30.0%	"	스웨덴	20.6%	25위
독일	29.8%	6위	에스토니아	20.0%	26위
일본	29.7%	7위	핀란드	20.0%	"
뉴질랜드	28.0%	8위	아이슬란드	20.0%	"
이탈리아	27.8%	9위	라트비아	20.0%	"
한국	26.4%	10위	스위스	19.7%	30위
캐나다	26.2%	11위	체코	19.0%	31위
프랑스	25.8%	12위	폴란드	19.0%	"
네덜란드	25.8%	"	슬로베니아	19.0%	"
미국	25.8%	"	영국	19.0%	"
오스트리아	25.0%	15위	리투아니아	15.0%	35위
벨기에	25.0%	"	아일랜드	12.5%	36위
스페인	25.0%	"	칠레	10.0%	37위
룩셈부르크	24.9%	18위	헝가리	9.0%	38위
이스라엘	23.0%	19위	G7 평균	26.3%	
튀르키예	23.0%	"	OECD 평균	23.1%	

* '22년 기준. 한국은 '23년 기준

□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 글로벌 스탠더드 비교

● OECD 평균 12.9%, G7 평균 10.8% / 대한민국 17.4% (지방세 포함)

※ 한국 법인세 비중은 OECD보다 4.5%p ↑, G7보다 6.6%p ↑

(비중추이 : ('12년) 19.8% → ('18년) 21.1% → ('19년) 21.4% → ('20년) 16.8% → ('21년) 17.4%)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

구분	한국	OECD 평균	G7 평균							
			일본	캐나다	영국	독일	미국	프랑스	이태리	
비중	17.4	12.9	10.8	19.6	13.7	9.9	9.5	7.9	8.3	6.4

* '22년 기준. 한국은 '23년 기준

3 개선방안

□ 법인세를 ‘누진과세를 통한 재분배 정책수단’으로 삼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양할 필요

- 법인은 주주, 경영자, 근로자 등 다양한 주체들의 결합체로서 주주, 임직원, 투자자 등에게 소득을 분배하는 파이프(도관)에 해당
→ 소득재분배 정책 효과에 한계
- 복잡한 과세체계는 기업의 성장·투자 저해하고 인위적인 기업분할 등 문제 야기
- 2018년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기업투자 감소는 경기 하방요인 중 하나 (OECD, '18년)
- 누진과세 등에 따른 세부담으로 한국 조세경쟁력 지속 하락 (IMD, '22년)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법인세제 개편

- 자국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 치열한 상황
→ 미국은 2018년 8개 과표구간을 1개로 단순화하고 최대세율 인하
(최대 39% → 21%(연방정부))
- 투자 확대·일자리 기반 확충, 성장잠재력 제고, 조세경쟁력 강화 위해 중요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필요

III-2	상속세 부담 완화 및 자본이득과세 제도 전환 검토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요약 ■

- (상속세 과세방식 비교) OECD 회원국 중 24개국은 상속세 과세, 14개국은 비과세 (상속세 과세 24개국 중 한국 포함 4개국만 “유산세 방식”)

〈OECD 회원국 상속세 과세 방식〉

구 분		국 가	
상속세 과세	유산 취득세	20개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일본, 네덜란드, 스위스,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칠레,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슬로베니아, 튀르키예
	유산세	4개국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자본이득세		4개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추가소득세		3개국	라트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비과세		7개국	오스트리아, 체코, 이스라엘, 노르웨이, 멕시코,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현황
및
문제점

- (상속세 최고세율 비교)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 : 50%
 - OECD 평균 15%, G7 평균 30.6% / 대한민국 50% (지방세 포함)
- 우리나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운영하지만, 적용대상이 제한적이고 요건이 엄격해 주요 선진국 대비 활용도 저조

〈한국과 독일의 가업상속공제 이용 현황 비교〉

구 분		'16	'17	'18	'19	'20	'21	평균
한국	건수	76	91	103	88	106	110	96
	금액(억원)	3,184	2,226	2,344	2,363	4,211	3,475	2,967
독일	건수	10,636	9,260	8,773	9,263	12,043	11,874	10,308
	금액(억원)	21,425	20,387	11,635	12,023	7,689	24,760	16,320

- 국내 총조세 대비 상속세 비중 : 2.4%

〈총조세 대비 상속세 비중〉

구분	한국	OECD 평균	G7 평균							
			프랑스	일본	영국	독일	미국	이태리	캐나다	
비중	2.4%	0.4%	0.6%	1.6%	1.3%	0.8%	0.7%	0.5%	0.1%	0.0%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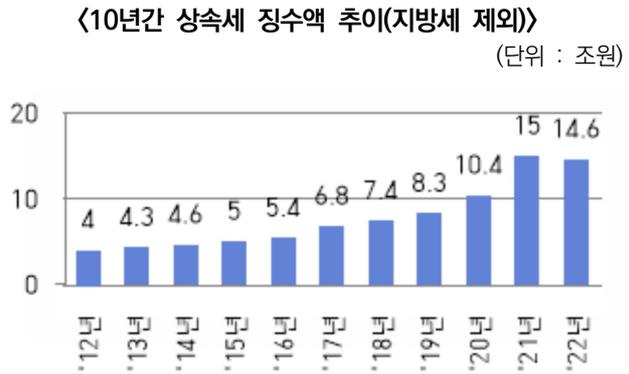
-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 시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은 매우 높은 수준
- 과중한 상속세는 기업투자와 개인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제약
- 단기적으로 현행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자본이득과세 제도로 전환 검토

1 현황

□ 국내 과세체계(과세표준구간별 세율) 및 10년간 상속세 징수액 추이

〈대한민국 상속세 과세체계〉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1~5억원 이하	(1억원 초과 금액의) 20%
5~10억원 이하	(5억원 초과 금액의) 30%
10~3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금액의) 40%
30억원 초과	(30억원 초과 금액의) 50%



* 기초공제액 2억원

2 문제점

□ 상속세 과세방식 글로벌 스탠더드 비교³⁾

○ OECD 회원국 중 24개국은 상속세 과세, 14개국은 비과세

※ 상속세 과세 국가 중 20개국 : '유산취득세' 방식
한국 등 4개국 : '유산세' 방식

〈OECD 회원국 상속세 과세 방식〉

구 분		국 가	
상속세 과세	유산 취득세	20개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일본, 네덜란드, 스위스,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칠레,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슬로베니아, 튀르키예
	유산세	4개국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자본이득세		4개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추가소득세		3개국	라트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비과세		7개국	오스트리아, 체코, 이스라엘, 노르웨이, 멕시코,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3) 유산취득세 : 상속인별로 실제 취득하는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 상속인별로 세율 차등 적용
유산세 :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 모든 상속인에게 동일한 세율 적용
자본이득세 : 상속재산을 미실현 자본이득으로 간주해 상속인이 추후 상속재산을 처분시 발생하는 이익에 과세

□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 관련 글로벌 스탠더드 비교

● 상속세 과세국가(24개국) 대부분 ‘초과누진세율 체계’

※ 미국 12개, 일본 8개, 독일·프랑스 7개, **한국 5개**, 영국 1개 (단일세율)

● 기초공제액(유산세 국가)

: 한국 2억원, 미국 1,292만 달러(약 170억원), 영국 32.5만 파운드(약 5.4억원)

□ 상속세 최고세율 관련 글로벌 스탠더드 비교

● OECD 평균은 15%, G7 평균은 30.6% / **대한민국은 50%**

※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OECD보다 35%p ↑, G7보다 19.4%p ↑

□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과세

● 한국만 유일하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인 주주의 주식 평가시 평가액의 20%를 가산

※ 할증과세 적용받는 대기업은 상속세율이 60%에 달해 상속세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 (* 중소·중견기업은 최대주주 할증과세 적용 제외)

(참고) 주요국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 미국

* 기초공제액: 1,292만 달러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만 달러 이하	18%	10~15만 달러	30%
1~2만 달러	20%	15~25만 달러	32%
2~4만 달러	22%	25~50만 달러	34%
4~6만 달러	24%	50~75만 달러	37%
6~8만 달러	26%	75~100만 달러	39%
8~10만 달러	28%	100만 달러 초과	40%

□ 일본

* 기초공제액: 3천만 엔 + 600만 엔 × 상속인수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천만 엔 이하	10%	1~2억 엔 이하	40%
1~3천만 엔 이하	15%	2~3억 엔 이하	45%
3~5천만 엔 이하	20%	3~6억 엔 이하	50%
5천만~1억 엔 이하	30%	6억 엔 초과	55%

□ 영국

* 기초공제액: 325,000 파운드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액	40%

□ 독일

* 기초공제액: 없음

과세표준	세율		
	배우자·직계상속	형제자매·조카·삼촌	기타 가족
7만5천 유로 이하	7%	15%	30%
7만5천~30만 유로	11%	20%	
30~60만 유로	15%	25%	
60~600만 유로	19%	30%	
600만~1300만 유로	23%	35%	50%
1300만~2600만 유로	27%	40%	
2600만 유로 초과	30%	43%	

□ 프랑스

* 기초공제액: 없음

과세표준(직계상속)	세율	과세표준(형제간)	세율		
8,072 유로 이하	5%	24,430 유로 이하	35%		
8,073~12,109 유로	10%	24,430 유로 초과	45%		
12,110~15,932 유로	15%	과세표준(사촌간)	세율		
15,933~552,324 유로	20%			과세표준액	55%
552,325~902,838 유로	30%	과세표준(기타)	세율		
902,839~1,805,677 유로	40%			과세표준액	60%
1,805,677 유로 초과	45%				

□ 가업상속공제 관련 선진국 비교

- 독일, 일본 등 다수 국가들은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운영 중
- 우리나라도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적용대상이 제한적이고 요건이 엄격해 주요 선진국 대비 활용도 저조

〈한국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구분	세부 내용
공제대상	중소기업,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대기업 등 일정규모 이상 배제)
공제한도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
사후관리	상속 후 5년간 가업영위, 가업용 자산의 20%이상 처분 금지, 고용인원 90%, 총급여액 90% 유지 등

〈한국과 독일의 가업상속공제 이용 현황 비교〉

구분		'16	'17	'18	'19	'20	'21	평균
한국	건수	76	91	103	88	106	110	96
	금액(억원)	3,184	2,226	2,344	2,363	4,211	3,475	2,967
독일	건수	10,636	9,260	8,773	9,263	12,043	11,874	10,308
	금액(억원)	21,425	20,387	11,635	12,023	7,689	24,760	16,320

□ 총조세 대비 상증세 비중 글로벌 스탠더드 비교

- OECD 평균 0.4%, G7 평균 0.6% / 대한민국 2.4%
※ 한국 상증세 비중은 OECD보다 2.0%p↑, G7보다 1.8%p↑
- 비중 추이 : ('11년) 1.0% → ('18년) 1.5% → ('20년) 1.9% → ('21년) 2.4%

〈총조세 대비 상증세 비중〉

구분	한국	OECD 평균	G7 평균							
			프랑스	일본	영국	독일	미국	이태리	캐나다	
비중	2.4%	0.4%	0.6%	1.6%	1.3%	0.8%	0.7%	0.5%	0.1%	0.0%

* '21년 기준. 일본은 '20년 기준

3 개선방안

- 글로벌스탠더드와 비교 결과,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은 매우 높은 수준

 - 과세방식(유산세), 최고세율(50%), 최대주주 할증과세, 기업상속공제 미흡, 세수 비중(2.4%)

- 과중한 상속세는 소득재분배 정책효과보다 기업 투자와 개인소비를 위축 및 경제성장 제약

 - (안산 소재 모 기업) “높은 상속세 부담을 안고 승계한 기업이 계속 잘 운영된다는 보장 없어 가업을 물려주기보다 기업매각한 대금 증여가 이로울 수 있어 고민 중”

- 특히 기업승계 재산의 대부분은 주식·지분으로 이러한 지분자산을 매각할 경우, 경영권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큼

 - 삼성 오너일가 12조원('21년, 주식매각 및 5년간 연부연납)
넥슨 유족 4.7조원('23년 물납), 한미약품·한샘 사모펀드 지분매각

(참고) 아스트라 제네카(Astra Zeneca) 사례

※ Astra Zeneca 사례

- 1984년 스웨덴 상속세율은 70%.
- 스웨덴 제약회사 'ASTRAAB' 설립자의 미망인이 사망(스웨덴 등 유럽국가는 부부간 상속세 없음). 유족들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식 대부분을 매각 → 주식이 대거 쏟아져 나온다는 소문에 주가 폭락. 주식을 팔아도 상속세를 마련하지 못함
- 결국 영국의 'Zeneca'에 인수되어 '아스트라제네카'가 됨
- 아스트라 사건 이후 스웨덴 기업의 해외이탈이 가속화되고 기업투자 감소, 실업률 증가 등 경제난 심화
- 2005년 스웨덴은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30%)로 전환

- 단기적으로 현행 상속세 부담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자본이득과세 제도 전환 검토

III-3	과감한 투자지원 세제 마련 필요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 요약 ■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투자촉진관련 세제를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단순하게 운용할 필요성 있음 																							
	<p style="text-align: center;">〈설비투자 세액공제 현황 (23년 한시, 국가전략기술 당기분은 '24년까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3">당기분</th> <th rowspan="2">증가분</th> </tr> <tr> <th>대기업</th> <th>중견기업</th> <th>중소기업</th> </tr> </thead> <tbody> <tr> <td>국가전략기술</td> <td>15%</td> <td>15%</td> <td>25%</td> <td>10%</td> </tr> <tr> <td>신성장·원천기술</td> <td>6%</td> <td>10%</td> <td>18%</td> <td>10%</td> </tr> <tr> <td>일반기술</td> <td>3%</td> <td>7%</td> <td>12%</td> <td>10%</td> </tr> </tbody> </table>	구 분	당기분			증가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국가전략기술	15%	15%	25%	10%	신성장·원천기술	6%	10%	18%	10%	일반기술	3%	7%	12%	10%
	구 분		당기분				증가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국가전략기술	15%	15%	25%	10%																				
신성장·원천기술	6%	10%	18%	10%																				
일반기술	3%	7%	12%	10%																				
<p style="text-align: center;">〈R&D투자 세액공제 현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대기업</th> <th>중견기업</th> <th>중소기업</th> </tr> </thead> <tbody> <tr> <td>국가전략기술</td> <td colspan="2">30% ~ 40%</td> <td>40 ~ 50%</td> </tr> <tr> <td>신성장·원천기술</td> <td colspan="2">20% ~ 30%</td> <td>30 ~ 40%</td> </tr> <tr> <td>일반기술</td> <td>2%</td> <td>8%</td> <td>25%</td> </tr> </tbody> </table>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국가전략기술	30% ~ 40%		40 ~ 50%	신성장·원천기술	20% ~ 30%		30 ~ 40%	일반기술	2%	8%	25%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국가전략기술	30% ~ 40%		40 ~ 50%																					
신성장·원천기술	20% ~ 30%		30 ~ 40%																					
일반기술	2%	8%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국 사례 비교) 한국 전략산업 지원은 세액공제 위주 한정되지만, 주요국은 세액공제 외 보조금도 지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세액공제</th> <th>보조금</th> </tr> </thead> <tbody> <tr> <td>한국</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 30~50% • 설비투자 : 대 15% / 중소 25% </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미국</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투자 : 반도체 25% 전기차·배터리 6~30%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 반도체 \$130억 • 설비투자 : 반도체 \$390억 </td> </tr> <tr> <td>중국</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법인세 면제 (10년)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190개사 121억 위안 지원 </td> </tr> <tr> <td>일본</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 반도체 60%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투자 : 반도체 30% </td> </tr> </tbody> </table>	구분	세액공제	보조금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 30~50% • 설비투자 : 대 15% / 중소 25% 	-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투자 : 반도체 25% 전기차·배터리 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 반도체 \$130억 • 설비투자 : 반도체 \$390억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법인세 면제 (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190개사 121억 위안 지원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 반도체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투자 : 반도체 30% 									
구분	세액공제	보조금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 30~50% • 설비투자 : 대 15% / 중소 25% 	-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투자 : 반도체 25% 전기차·배터리 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 반도체 \$130억 • 설비투자 : 반도체 \$390억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법인세 면제 (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190개사 121억 위안 지원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 반도체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투자 : 반도체 30%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의 보조금 지원을 상쇄할 수 있는 과감한 투자지원 세제 마련 필요 																							

1 현황 및 문제점

□ 설비투자 세액공제 ('23년 한시, 국가전략기술 당기분은 '24년까지)

- 한국은 투자촉진세제를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단순하게 운용할 필요성 있음

구 분	당기분			증가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국가전략기술	15%	15%	25%	10%
신성장·원천기술	6%	10%	18%	10%
일반기술	3%	7%	12%	10%

□ R&D투자 세액공제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국가전략기술	30% ~ 40%		40 ~ 50%
신성장·원천기술	20% ~ 30%		30 ~ 40%
일반기술	2%	8%	25%

□ 주요국 전략산업 지원 사례 비교

- 한국 전략산업 지원은 세액공제 위주 한정되어 있지만, 주요국은 세액공제 외 보조금도 지원

구분	세액공제	보조금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 30~50% • 설비투자 : 대기업 15% / 중소기업 25% 	-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투자 : 반도체 25% 전기차·배터리 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 반도체 \$130억 • 설비투자 : 반도체 \$390억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법인세 면제 (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190개사 121억 위안 지원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 반도체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투자 : 반도체 30%

2 개선방안

- 외국의 보조금 지원을 상쇄할 수 있는 과감한 투자지원 세제 마련 필요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개선 공동 건의집

2023년 11월 인쇄

2023년 11월 발행

발행처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인쇄처 경성문화사 (02)786-2999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개선 공동 건의집